

## 학교기업 설립·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 및 『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』(이하 ‘관련 법령’이라 한다)에 따라 가천대학교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교기업 소재지)**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가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계획 등)**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의 소재지
2. 학교종목 및 관련 계열(학과) 또는 교육과정
3. 담당 직원 현황
4. 재정투자계획
5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
② 산학협력단장은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·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(이하 ‘학칙’이라 한다)에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사업의 범위)**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 현장실습교육 개발, 운영
2.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
3.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
4. 대학의 발전 지원
5.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**제5조(운영조직)**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학교기업은 사업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2인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을 그 지원조직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의 직원 및 연구원에게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계)** ① 학교기업의 사업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② 학교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되 학교기업 별로 구분하여 계정을 관리한다.

③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, 지자체, 대학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물품판매, 용역제공, 기술이전 등에 의한 수입금
3.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 등

④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
2. 학생 현장실습경비
3. 시설의 신축 및 기자재 구입비
4. 시설 및 장비 유지,보수비용
5. 대학의 시설,운영지원비
6. 수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7.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겸임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,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기업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 운영규정 개정(안), 예산편성(안)에 관한 사항
3. 제3조 사업의 기획,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
4. 수익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
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현장실습)**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
② 학교기업은 본교 학칙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재학생은 본교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9조(보상금 지급)**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이익의 30% 범위내에서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10일부터 시행한다.